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93
----------	-------

발의연월일 : 2026. 3. 23.

발 의 자 : 이춘석 · 윤준병 · 박민규  
안호영 · 김동아 · 한민수  
윤후덕 · 임호선 · 서미화  
이연희 · 문진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보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보상의 범위를 신생아의 뇌성마비 및 사망, 산모의 사망 등으로 한정하여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산모에게 영구적인 신체 손상이나 마비 등 중증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령상 적절한 구제는 어려운 실정임.

산모에게 발생한 중증장애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동반하고 장기적인 간병과 재활로 인하여 가계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함에도 중증장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보상 범위를 상향입법하고 보상의 범위에 산모의 중증장애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등).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운영, 보상의 범위”를 “운영”으로 한다.

이 경우 보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만 과정에서 생긴 산모의 중증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중증장애
2.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3.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4.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피해로서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사고 보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② ~ ④ (생 략)
- ⑤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3.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4.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피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  
-----운영-----  
-----  
-----  
-----.